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

2022년 02월 10일

충청북도 영동군청의 장

대상 시설물			· 지정(해제)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	нг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^ 3(M^ /^[#	관한 사항	비고
신흥2교	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28-1	영동군청 건 설교통과	기존 신흥2교 철거 후 재가설 완료	기존 신흥2교 철거 후 재가설 완료	